「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분야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28일

Ⅰ. 공모 개요

○ **사업목적** : 전통문화 유망 청년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보육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초기창업기업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공 모 명** : **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모기간** : 2022년 3월 28일(월)~4월 27일(수)

○ **사업기간** : 7개월 (22.6~12 예정)

※ 최대 3년간(2022~2024년) 지속 지원. 단, 1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성과별 정부 사업화 자금 지원액 차등 지원

○ **선정규모** : 총 38개사

○ **사업화 자금** : 기업당 평균 20백만원 지원

※ 창업기획자(AC)를 통한 교육·멘토링 등 별도 지원

구분	선정기업 수	기업당 평균 사업화 자금	총 사업 예산
초기창업기업 (창업 3년 미만)	38개사	20백만원	760백만원
	*** 3년간 평균 총 사업화 자금: 100백만원(변경 가능) 지원** 1년차('22) 20백만원 ▶ 2년차('23) 30백만원 ▶ 3년차('24) 50백만원		

[창업기업 당 지원 예산(예)]

※ 사업화 자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 자부담 매칭 필수

○ **사업내용** :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Ⅱ.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가. 신청 자격

○ 최초공고일 기준(2022.3.28.) 전통문화산업*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

※ 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까지 사업 참여 가능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1호 자목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최초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2019년 3월 28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업력 확인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참고1]의 창업 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결정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 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으로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 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아래'가~마'요건의 기술경력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사업에 참여 가능

※ 청년창업 지원 취지에 따라 총 참여기업의 30% 이내로 선정

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마. 동종분야 박사, 기술사, 기능장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2.4.2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2.4.22)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공고일 기준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기업)**

☞ 최초 공고일('22.3.28)부터 협약 체결기간인 2022년 12월까지, 문체부 등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기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해당 사업의 협약 기간이 본 사업의 협약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어도,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주최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유사사업 [참고3] 참조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Ⅲ. 지원 내용

가. 사업화 지원

1) 사업화 자금 지원(정부지원금)

○ **지원총액** : 760백만원

- 기업별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평균 20백만원

※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 자부담 매칭 필수**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제20조 2항에 따라 기업 활동의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으로 사용 불가함. 이에 부가세에 해당하는 10% 금액을 자부담으로 매칭함)

○ **사용용도** :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재권 취득비, 마케팅비 등

※ 유형자산 취득 불가

○ **지원 체계**

사업지원 (응모)	→	창업자 선정	→	창업기업-창업기획자(AC) 매칭	→	정부지원금 교부	→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기업		KCDF· 창업기획자(AC)		KCDF· 창업기획자(AC)		KCDF→ 창업기획자(AC)		창업기획자(AC) →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구성**

선정기업 수	기업당 사업화 자금	총 사업 예산
38개사	10~30백만원	760백만원

▶ 부가세 및 관세에 해당하는 자부담(10%) 외 추가 자부담 10% 이상 매칭 시 → 인건비 집행 가능

▶ 추가 자부담이 없거나 10% 미만 매칭 시 → 인건비 집행 불가

* 추가 자부담금은 현물(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대체 가능

* 인건비는 **대표 또는 대표의 가족, 친인척 집행 불가**하며, 4대보험 적용 고용인력에 한해 집행 가능

※ **연도별 평균 사업화 자금 지원액(변경 가능)**: 1년차('22) 20백만원 → 2년차('23) 30백만원 → 3년차('24) 50백만원

2) 초기창업기업 기업 특화 지원(창업기획자(AC) → 초기창업기업)

○ **사업화 지원 및 관리** : 창업 지원금 활용, 수익모델 개발 및 보완,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기업별로 차별화된 포인트와 강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특화 지원

○ **교육 · 멘토링** : 기업의 특징, 요구사항,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 **사무공간 지원** :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사무 · 회의 공간 지원

○ **프로모션 · 홍보 지원** : 유통 · 투자상담회 등 프로모션 지원 및 국내외 매체, 협력기관 등 홍보채널 활용 홍보

○ **투자유치 지원** :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데모데이 개최 및 우수참여 기업 직접투자

○ **시상** : 우수 초기창업기업 대상 시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진흥원 원장상 등)

○ **사후 관리** : 후속 투자 유치, 상호협력 등 후속 지원

※ 기업 특화 지원은 해당 창업기획자(AC)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후속 지원

○ 참여기업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단, 매년 평가를 통해 미흡 (성과평가 60점 미만) 기업 사업 중도 탈락

- 연도별 사업화 자금 지원액(예정) : 3년간 평균 총 100백만원 (1년차 평균 20백만원 → 2년차 평균 30백만원 → 3년차 평균 50백만원)

Ⅳ.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년 3월 28일(월)~4월 27일(수)

○ **신청방법**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공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업공모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cdf.kr/businessapplication**

※ 우편/방문 접수 불가, 접수된 자료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 **세부일정(안)**

신청 및 접수	→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발표	→	발표(PT)심사
3.28(월)~4.27(수)		4.28(목)~5.12(목)		5.13(금) 예정		5.23(월)~27(금)

↓

창업기업 지원	←	협약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	최종결과 발표
22년 6월~12월		22년 6월		5.31(화) 예정

※ 초기창업기업-창업기획자(AC) 매칭은 지원프로그램 운영 내 공통교육 후 추진(예정)

※ 상기 일정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발표(PT)심사 및 합격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df.or.kr/)에 공지 예정

* 세부 일정은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붙임 1~3의 서식 활용

세부 내용	비고
·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신청서 1부	붙임1
·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신청 관련 증빙자료 - 기창업(창업 3년 미만) 증빙서류 1부 - 기술경력보유 증빙서류 1부 -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서류 1부	붙임2
·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붙임3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임의 양식의 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제외

Ⅴ. 선정 및 지원 절차

가.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 자격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등 평가

※ 서류심사 가점 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4] 참조)

※ '2020년 전통문화분야 청년 예비 창업기업 공모' 우수 사업 참여자(기업) 서류심사 면제

※ '2021년 전통문화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서류심사 면제

※ 발표(PT)심사 대상은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목표 1.5~3배수 내외에서 선정

※ 평가 과정 후에도 신청 자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처리함

나. 발표(PT)심사

○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발표(PT)자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으로 하며, 심사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최종 선정 예정 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서 및 발표 자료 내용을 현장 확인함

다. 결과발표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 인원 2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라. 협약체결

○ 대상기업(최종선정자)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 결과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 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에 정한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 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Ⅵ. 유의사항

가. 신청 및 평가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에 미 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불참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나. 선정 후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협약 기간 내 창업 교육, 사업화 코칭, 네트워킹 참여 등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사업비는 '이나라

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재)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의 수시 ·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의 협약 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Ⅶ. 문의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팀 (02-398-1697)

【참고】

1. 창업 여부 및 창업 업력 기준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3. 지원 제외 대상 유사사업
4. 서류심사 가점사항
5. 정부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붙임】

1. 전통문화 청년 창업기업 공모 신청서 1부
2. 전통문화 청년 창업기업 공모 신청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3.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참고1 창업 여부 및 창업 업력 기준(공고일 기준)

□ 창업 여부 기준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창업의 범위 신·구법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20.10.8.)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참고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3 지원 제외 대상 유사 사업 예시

연 번	사 업 명
1	○ 도전! K-스타트업
2	○ 예비창업패키지
3	○ 초기창업패키지
4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
5	○ 재도전성공패키지
6	○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7	○ 사내벤처육성프로그램
8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9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10	○ 아기유니콘 200육성사업
11	○ K-스타트업 센터
12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13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14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집중육성)
15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16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17	○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18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19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20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21	○ 창업 맞춤형 사업
22	○ 글로벌창업사관학교(사업화)
23	○ 창업인턴제(사업화)
24	○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25	○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26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27	○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28	○ 관광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29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30	○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31	○ 농식품 기술평가지원
32	○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33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 : 세움지원(초기), 시작지원(창업)
34	○ 문화콘텐츠산업 기업육성지원사업
35	○ 예술기업 공모전(창업과정지원)
36	○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기반 구축 지원
37	○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

※ 위 사업 외 주관사가 판단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사업

- 위 사업에 기 선정(협약 후 포기자 포함) 되어 본 사업 최초 공고일(2022.3.28)부터 본사업 협약종료일(2022.12.31)까지 기간 중 지원 기간이 하루라도 겹치는 자(기업)는 본 사업 참여 불가

※ 유사사업의 사업기간이 본사업의 협약기관과 겹치지 않을 시 중복 수혜 가능

참고4 서류심사 가점 사항

구분	세부 내용	증빙서류	가점
1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등록원부	0.5점
2	○ 장애인(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확인)	증빙서류	0.5점
3	○ 만 29세 이하의 대표자	신분증	0.5점
4	○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수상 1건당) (최근 2년 이내(’19~현재) 경진대회 수상자, 참고 5)	수상 관련 증빙서류	0.5점
5	○ 최근 2년 이내(’19~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교육 이수자 (총 30시간 이상의 기술창업 교육을 수료한 자(온라인 교육은 제외))	수료증	0.5점
6	○ 사회적 기업	인증서	1.0점
7	○ 일자리 안정 자금 수혜기업	증빙서류	1.0점
8	○ 근로자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증빙서류	1.0점
9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기업	가입증서	1.0점
10	○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보유기업(투자유치액 30백만원 이상)	증빙서류	1.0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참고5 정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부처	경진대회명	인정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수상자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 : 시작지원	수상자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K-스타트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본선이상 입상자
	혁신 창업리그 (일반,클럽리그)	수상자
	여성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특별상 이상 수상자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수상자
	디스플레이 챌린지	수상자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수상자
국방부	국방 start-up 챌린지	수상자
환경부	환경창업대전	수상자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방사청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산림청	산림분야 청년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특허청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상자
해양수산부	K-씨푸드 해양수산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해양산업 오션비즈니스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금융위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